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제협력요원제도폐지에따른
순직심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

1. 의결주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이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순직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함.

나. 순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 제10조)

순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심사의 신

청, 심사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보훈 및 예우(제11조)

법 제6조에 따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외교부장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2020. 6. 12. ~ 6. 22.) 진행 예정

라. 기 타 : 입법 예고(2020. 6. 12. ~ 7. 23.) 진행 예정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직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수당 등)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순직 심사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② 제1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자료 수집·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망자 파견 및 담당 사무를 증명하는 자료
2. 사망경위 조사서 및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3. 舊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제10조 (심사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의 순직 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직을 결정한다.

1. 사망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2. 별표1에 명시된 구체 기준에 따라 그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확인.
3. 제2호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 의결

- ② 제1항에 따라 순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요원의 근무환경,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신청인 유족이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 신청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⑤ 외교부장관은 순직 여부 의결 결과를 유족, 병무청, 보훈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 및 예우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외교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수집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5항나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기관 등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직 인정기준 및 범위(제2조제2항 관련)

순직의 인정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인 정 기 준 및 범 위
1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2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3	소속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의 중독으로 인한 사망
4	합숙근무처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 또는 공무수행 중 근무처 외의 취침 포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5	직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6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7	출장 또는 근무기간의 직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8	소속기관 재지정·변경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9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의 통제하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10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
11	사회통념상 근무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다만, 국제협력요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그 밖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신 분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요원				
	소 속	한국국제협력단		군 번		
	입대일자 (임용일자)		직책(직위)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요원	전역일자 (퇴직일자)	
사 망 발 생 경 위	구 분	☐ 사망 ☐ 부상 ☐ 질병 ☐ 부상·질병			사망 발생일	
	사망 원인					
	* 사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상이)자 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국제협력요원 순직 요건 관련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귀하

유족대표자 선정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국제협력요원과의 관계
	유족의 위임 내용	유족대표자 선정	
위임자	성명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외교부 장관 귀하

대표자 (서명)

첨부서류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대표자의 동순위 유족의 위임내용란의 []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3.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4.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	성명	군번 계급(직급)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속 한국국제협력단	입대(임용)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유족 대표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직인

외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순직 심사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직위)	
	군번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요원	
	사망일		입대일(임용일)	
			전역일(퇴직일)	
신청인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족 및 가족사항 (신청인 포함)	순직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유족대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유족 대표자 선정서 4.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원본 5. 의견진술신청서(의견 진술 신청시)
-------------	---

의견 진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또는 청구일자	년 월 일 시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개발협력과	
연 락 처	(02) 2100 - 8349